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이영진**

목 차

- I. 서 론
- II. 경계획정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 III. 주요국가의 입장
- IV. UN COPUOS에서의 논의 과정 개관과 최근의 논의동향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충북대학교 기성회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미국의 우주과학자 칼 세이건은 광대무변한 우주와 그 가운데 하나의 먼지 정도의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 그리고 그 안에 깃들여 살고 있는 70억 인류의 역사를 탁월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묘사해냄으로써 ‘과학자가 지구에 바치는 대서사시’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세이건은 그의 저술 ‘코스모스’에서 인간은 별의 잔해로 이루어 졌고 별이 일생을 마치고 우주공간으로 흩어진 잔해는 다시 모여 별이 되고 또한 행성이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즉 모든 인류는 ‘별에서 온 그대’들이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곧 우주이다.

인류가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린 지 60년 가까이 흘렀다. 그동안 인류는 다양한 형태로 우주로 진출하여 우주개발과 탐사, 이용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영역은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Sputnik 발사 이후 국제공동체는 우주공간과 천체의 개발가능성과 관련하여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 등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지만 특히 우주공간이 법적 진공상태인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1957년 이래 지금까지 약 7100개의 인공위성이 지구상에서 우주공간으로 발사되었다.¹⁾ 이것들 중 약 1300기 정도가 현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구 주변의 궤도상을 선회하거나 혹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다른 혹성을 향해 떠나던 탐사활동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 이와 같은 우주물체들은 통상 우주공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물체가 우주공간의 범주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무엇을 우주공간이라고 하며 그것의 범위는 어디서부터인가?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최근까지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주된 국제조약으로 5개의 입법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흔히 우주

1) <http://satellitedebris.net/Database/Launchhistoryview.php>

2) <http://www.ucsusa.org/space-weapons/satellite-database.html>

현장으로도 일컬어지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하, 우주조약)은 우주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문서인 바, 동 조약에서는 그 명칭에 우주공간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공간 자체의 정의나 법적 지위 또는 어디서부터 우주공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우주법도 국제법의 한 영역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우주공간의 이용은 그것이 갖는 공간적 특성과 자구와의 특수한 물리적 관계로 인해 다른 부문의 국제법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주법이 기존의 지구중심의 국제법 적용을 벗어나 지구 영역밖의 공간 및 천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규율해야하는,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법질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할 분야나 공간이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우주공간 나름의 법적 지위문제와 이에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지구궤도나 기타 공간이 우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혹은 국가관할권 범위내에 놓여지는 부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 우선 1958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잠정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등재된 이래⁴⁾ 실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문제에 관해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학설상 어떠한 입장을 보여 왔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주요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이 문제는 우주법에서도 가장 장기간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이며 수십종 이상의 다양한 이론적 대답이 있다. 다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바 여기서는 우주시대의 개막 이래 COPUOS 법률소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각국의 태도 외에 국내법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문제에 관해 개별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의 말미에서는 UN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경계논의의 진행상황과 경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살펴본 다음 결론에 갈음하여 평가 및 전망을 해 보고자 하였다.

3) Ram S. Jakhu, "The Legal Status of the Geostationary Orbit", A.A.S.L., Vol.7, 1982, p.333.

4)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p.137.

2.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로마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고전적 개념에 입각하여, 시각을 달리하는 몇 가지 주장이 주로 1950~60년대에 활발히 개진된 바 있는데 이들 견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주공간을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무주의 영역으로 보자는 입장으로서 일찍이 Cheng교수에 의하면 전통국제법상의 무주지는 무주의 공역으로 그곳에서의 실효적 지배의 완성으로 선점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 이 무주물이론(res nullis)은 Rome사법상의 개념을 국제법에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오늘날 관점에서 이러한 논리를 관철시키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⁶⁾ 우주공간에 대한 선점을 인정한다면 우주에 대한 개발 및 탐사는 개개 국가의 과학기술적·경제적 수준에 의해 좌우되므로 무주지에 대한 선점에 앞서 모든 국가에 동등한 기회의 배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일련의 조약규정에서도 언급된 우주공간 및 천체가 인류공동의 활동영역이라는 기본개념에 반하고, 일국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선점이 허용된다는 사실과 우주와 같이 무한한 영속체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⁷⁾

그러면 우주공간은 Rome사법상 반대 개념인 모든 국가에 개방된 공유물인가?

이는 일찍이 공해의 자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Grotius에 의해서도 사용된 개념이다.⁸⁾ Jenks에 따르면 대기권 밖의 공간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해에 유사한 법역으로서 공유물(res communis)에 해당되며⁹⁾ 이는 전 인류에게 자유로이 개방되어야 하는 바, 우주공간 자유의 원칙은 제국의 관행에 의해 지지되어 당시에도 이미 관습법으로 확립이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⁰⁾ 이에 관해

5) Bin Cheng, "From Air Law to Space Law", Current Legal Problems, Vol.13, 1960, p.234. Y. Blum, Historic Titles in International Law, 1965. p.103.

6) E.R.C. Van Bogaert, Aspects of Space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 1986, pp. 31~32.

7) 김종복, 신 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P.39.

8) H. Lauterpacht, "The Grotian Tradition in International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56, p.1.

9) 또 Brownlie 교수도 우주공간이나 천체가 대체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6th ed., Clarendon Press, Oxford, 2003, p.264.

10) C. Wilfred Jenks, "The International Control of Outer Space", Legal Problem of Space

서는 소련의 학자들도 거의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음이 그들의 저술이나 각종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견해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¹¹⁾ 또한 Jessup 판사와 Taubenfeld교수는 그들의 저서에서 우주법은 국방상의 견지에서 해양법과는 좀 색다른 성격을 대유하고 있으므로 해양법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우주공간에다 유추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대신 남극조약¹²⁾을 하나의 패턴으로 여기에다 적용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¹³⁾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유물이라는 개념도 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남극이 지구 내에 있는 반면 우주공간은 지구밖의 상공에 있다는 기본적 요건의 차이로 인해 각각에 대한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¹⁴⁾ 더욱이 우주공간이 전 인류의 공유물로서 자유로이 개방되더라도 우주를 탐사·개발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즉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들 견해의 실질적인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공간 자유의 원칙에는 당연히 찬동하면서도 그러한 결함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에서 말하는 국제공역(domaine public international)설의 입장이다. 이는 국제공동체를 이기적인 주권국가들의 경쟁적 분열사회로 보기보다는 국제연대성에 입각한 공동체의식에 따라 일정한 공간을 특정국가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공익개념에 입각하여 함께 이용하는 국제공역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¹⁵⁾ 특히 우주공간은 그 물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국가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법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내지는 인류사회 전체의 입장

Exploration: A Symposium, 1961, pp. 734, 748.

Philip W. Quigg, "Open Skies and Open Space", 37 Foreign Affairs, 1958, p. 96.

11) Korovin, "International Status of Cosmic Space", International Affairs, 1959, I, p. 53, and G. Tunkin, An opening statement before the Legal Sub-Committee of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1962.5.28

12) 남극조약은 1959년말 미·소 양대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조인한 것으로 그 제1조에서 「평화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군사기타, 무기실험 등의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지역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조직화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조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2,3,5조 참조.

13) Jessup and Taubenfeld, Controls for Outer Space, 1959, p.212; 노명준, "우주공간의 국제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Vol.16, 1983, pp. 285~286에서 재인용.

또한 E. Fasan, Weltraumrecht, 1965, S. 75.

14) 서희원,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문집, 제15권 제1호, 1970, p.290.

15)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국제법 II, 일조각, 2003, p.336.

에서 행해져야 하는 바 그런 관점에서 우주공간은 선점의 대상이 되거나 특정 국가에 의해 영유 되어서는 아니 되고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Ogunbanwo도 우주공간은 인류의 유산으로써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으며 이를 국제적 규제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실제로 우주법의 초기생성과 발전단계에서 다수국가는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입장을 개선하면서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른 바 고전적 개념에 바탕을 둔 상기의 견해들은 이후 각국의 정책이 반영된 결의 또는 실정법으로의 성문화과정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질차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¹⁷⁾ 이는 로마법적 소유권 개념에 연유한 방식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외에도 우주의 법적 지위를 당사국사이에 미리 규정하는 것에 대한 내재적 문제로 인해 UN COPUOS 법률소위원회나 총회 등에서 우주의 법적 문제를 다룬 결의 채택 및 조약의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회피한 듯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시의 국제사회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우주공간 및 천체에서의 활동 그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1967년 채택된 우주조약도 그 전문에서 "우주공간은 전 인류의 이익증진을 위해, 또 그를 위한 탐사와 이용은 평화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이하 각 조항에서도 자유롭고 평화적인 이용과 그곳에서의 활동은 상호 원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달협정에서는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동 개발을 규율할 적당한 절차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제적 제도를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²⁰⁾ 물론 우주조약의 상당 부분이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들 규정속에는 우주의 법적 지위를 논함에 있어서 직, 간접적으로 기본적인 근거를 이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6) Ogunsola O. Ogunbanwo, *International Law and Outer Space Activities*, Martinus Nijthoff, 1975, p.75.

17) 김종복, *op.cit.*, 2011, p.40.

18)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p.87.

19) 우주조약, 제12조, 제9조.

20) 달협정 제11조 5항.

요컨대 우주공간과 달 및 기타 천체는 우주조약이나 달 협정 등에서도 각각 국가영유의 금지(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및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서 그 개발과 사용은 온 인류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누구에 의해서도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제공역으로서 어떠한 국가도 우주공간에 대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기술적, 경제적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주공간에 대한 국가의 평등과 자유의 보장 및 국제적 관리에 바탕을 두고 국가 간의 대립의식을 지양한 가운데 완전한 국제협력체제가 이룩될 소지가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남극조약이 갖는 의미도 그것이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의 확보를 규정한 조약으로서 국제협력체제의 선구가 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러한 맥락에서 우주공간은 국제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이 국제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국제화를 달성, 인류의 이익 증진과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II. 경계획정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1. 경계획정의 필요성

흔히들 우주법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질문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우주공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의외인 것은 우주시대가 열리고 그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 거의 60년이 된 지금까지도 국가공역과 우주공간의 경계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다는 사실이다.²²⁾

21) 서희원, *op.cit.*, pp.289~290.

22) Matthew J. Kleiman, *The Little Book of Space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3, p.XII.

실제로 우주시대의 도래이후 영공과 우주공간 사이의 경계획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법상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1967년의 우주조약에서도 이에 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의 잠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으나 경계획정이 당시로서는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기논의에서 제외되었다.²³⁾ 이후 프랑스의 제안으로 1967년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중단되었다.²⁴⁾ 그런데 1976년 Bogota 선언을 통해서 적도국가들이 지구정지궤도에 관한 주권 선언을 하고 나서자 사정은 크게 달라졌고 이후 우주공간의 경계획정문제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어 이것이 지구정지궤도 문제와 함께 UN COPUOS의 주된 과제로 부상했던 것이다.

오늘날 영공이원의, 대기권 공간을 넘어서 국가의 영역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즉 우주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종래에 Roma 법언에 의거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하늘 끝까지 그것을 소유한다.」(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coelum)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는 그의 상공에 대해 무한정의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이에 찬성하는 국가는 없다. 우선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성공 이래로 수많은 인공위성이 타국 영토위로 해당국가의 아무런 항의 없이 통과하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바로 그러한 인공위성이 운항되는 우주공간이 영역주권과 무관한 별개의 법제도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들 두 공간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이념적 출발점이 다른 만큼 그 경계선을 확정해야 할 이론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들 사이를 구분하는 물리적 혹은 자연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꼭 경계선을 그으려면 어느 정도 인위적 합의가 필요한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 주장하는 바 내용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국가들이 통신위성의 전파 발송과 중계 등에 가장 유리한 지구정지궤도를 하나의 천연자원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국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23) UN Doc. A/4141. p.25.

24) UN Doc. A/C.195/37, para. 18.

한편 이들 적도국가들의 집단적 주장에 반대하는 다수의 다른 국가들의 태도 또한 만만치 않아 이것이 바로 우주법의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각된 것이다.²⁵⁾

최근 우주의 경제적, 군사적 이용이 급격히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얽히게 되었는데 앞서의 지구정지궤도의 이용과 법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각종 우주물체의 발사 및 귀환과정에서 외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등 국가 공역과 우주공간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에 따른 구체적, 정책적 문제점들이 경계 획정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다.²⁶⁾ 최근까지는 국내외 발사장소의 적절한 선정 등을 통해 우주물체가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할 필요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약소국가나 특히 영토가 좁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주물체의 발사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하더라도 외국 영공의 통과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²⁷⁾ 그런 가운데 구소련이 지난 1979년 우주물체로서 위성의 궤도 진입과 지구로의 귀환을 위해 다른 나라의 영공을 비행 및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바 있었으나 아직은 동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을 가진 조약도 없고 아직 국가의 관행이 누적된 증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현행 법체제상으로는 우주물체의 외국영공 통과권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²⁸⁾

또한 1919년 항공의 규율을 위한 파리 조약이나 1944년의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도 영공의 배타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한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우주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1967년 우주조약에서도 우주의 구체적 정의나 그 경계획정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공간 자유이용 원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25) Carl Q. Christol, *The Mor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1984, pp.435~436.

26)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op.cit.*, 2003, p.289.

27) A.E.Gotlieb,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1981-1, p.235.

28) Manfred Dausies, *Die Grenze zwischen Luftraum und Weltraum als Gegenstanden rechtlicher Regelung*, *Wurzburg*, 1969, s.281~282 : 장효상, "위성직방송에 대한 중·장기대책과 그 법적 측면", *국제법학회논총*, 제30권 제2호, 1985, p.94.

한편 UN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는 1967년 이래로 그러한 한계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안한 이래 해마다 동 문제를 심의하고자 했으나²⁹⁾ 상당수의 우주선진국들이 오히려 이에 관해 소극적이라 별 진전이 없었고, 당시에도 각국에서 여러 학자들이 갖가지 근거에 의거하여 가능한 이론 개진을 하였지만 국가공역과 우주공간을 구별짓는 구체적 특성과 기준에 관해서 확고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³⁰⁾

결국 이 문제는 양 공간의 물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론적인 규명을 하면서 국가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관행이 성숙되는 것을 기다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내용과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정리해 보려고 하는바 실제로 이는 우주법에서도 가장 장기간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우주공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기준들만 하더라도 너무나 다양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³¹⁾ 이를 일일이 열거하여 논증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부득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이론이나 학설들을 중심으로 공간론(영역구분론) 및 기능론적 접근방식으로 구분하여 개관해 보는 방식을 취하여 기술해 보려고 한다.³²⁾

2. 공간적 접근방법(Spatial Approach, 영역구분론)

가. 영공무한설(The Theory of [Usage ad colum])

영공무한설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설로서 오늘날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거의 없긴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적도국가들의 관할권 주장과 더불어 새로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³³⁾

29) UN Doc. A/AC. 105/358, 1986, p.6.

30) W.Friedman, Lissitzyn and Pugh,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1969, p. 639.

31) Gotlieb에 의하면 우주공간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하는 이론만도 무려 35 가지 내지 40가지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있다. A.E.Gotlieb, op. cit., p.225.

32) 우주공간의 범위에 관한 제 견해 및 그 비판에 관한 국내적 논의는 노명준, “우주법에 관련된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9권 제2호, 1964, pp.276~284. 또한 서희원,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제1호, 1970, pp.284~287 및 임덕규, “우주공간의 범질서,” 우암 양준모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2, pp.246~248. 신성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에 대한 항공/우주법적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2002, pp.146~181. 등 참조.

이 이론의 요지는 국가의 영역주권이 하토국의 상공에 무한히 미친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Roma** 사법상의 원칙을 공법에 도입하여 우주공간에까지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³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Coelum** 역시 개념상 논란이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변동하는 무한한 공간의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는 하나의 욕심이거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³⁵⁾ 이와 관련하여 1944년의 시카고 협약 제정 당시 우주공간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이 「국가주권이 상공에 완전하고도 배타적으로 미친다」(complete and exclusive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above its territory)고 한 동 협약 제1조의 「airspace」는 상공무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었다.³⁶⁾ 그러나 이는 용어의 해석상으로도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적도국가들과의 관련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원래 적도국가들의 입장은 우주공간의 정의나 경계 획정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주공간상의 지구정지궤도에 대해 천연자원이라는 명분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다 보니 경계획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전술한 **Bogota**선언으로 공식화된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영공무한설의 견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i) 지구정지궤도는 지구의 중력의 힘에 의해 존재하며 따라서 우주공간이 아니라 하토국의 관할에 속한다.

ii)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에 관해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영토국의 주권이 공간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며 영토국의 천연자원으로 그 주권에 한한다.

iii) 현재 주권주장을 무한히 할 수 있는 영토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의 국제법원칙은 어디에도 없다.³⁷⁾

33) ITU, Broadcasting Conference, Doc.No.81-E(January 17, 1977), Annex 4.

34) J.F.McMahon, "Legal Aspects of Outer Spac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8, 1962, p.342.

35) Jeffert Prevost, "Law of Outer Space", *Cleveland State Law Review*, 1980, pp.598.

36) Philip W.Quigg, "Open Skies and Outer Space", *Foreign Affairs* 37.1958, pp. 95~96.

同旨의 Paul de la Pradelle의 주장에 관해서는 Nicolas M.Matte, *Aerospace Law*, Sweet and Maxwell, London, 1969, p.35.참조.

37) Soli K.Cooper, *The Geostationary Orbit, Problems and Possibilities*, 1982.4, p.17.

그러나 이 Bogota 선언의 원칙들은 과학적 내지 법적인 양 측면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성이 궤도에서 중력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정지 궤도나 위성의 존재에 필요한 요소의 전부는 아니며 또한 중력도 지구의 적도부분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을 무한정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관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963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총회 결의나³⁸⁾ 2015년 현재 128개국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국가들이 서명 또는 가입해 있는 1967년의 우주조약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은 사용이나 점령 기타 수단에 의해 국가의 영유대상으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³⁹⁾ 동 조약은 다수의 적도국가들도 당사자로 되어 있다(Columbia는 비준을 안함).

요컨대 이 학설은 사법이론의 원용이나 천체물리학적 견지에서 주장된 것으로써 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주공간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탐사나 개발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우주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만약 영공무한을 인정한다면 당장 인공위성이나 기타 우주물체의 궤도 비행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상해 보면 그에 관한 해답은 자명해 질 것이다.

나. 대기권설(Atmospheric theory)

이 학설도 공간적 접근방식의 구분론으로서 가장 오랜 것 중의 하나로써 이는 국가 주권이 공기가 존재하는 공역 즉 대기권의 상부한계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한 현행법의 중요한 기준은 1944년의 시카고협약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조에서 말하는 airspace의 해석이다.⁴⁰⁾ 여기서 동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에 선행하는 1919년의 파리협약 제1조를 그대로 재확인한데 불과하므로 airspace는 불어 l'espace atmospherique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대기가 존재하는 공간, 즉 대기권을 가리키고 국가의 주권은 이 대기권의 범위에서 행해진다는 대기권설이 성립된다는 것이다.⁴¹⁾

38) UN G.A.Res. 1962(XV111), Dec.13, 1963.

39) The Outer Space Treaty, Art.2.

And see R.Arzinger, "The Use of the Geostationary Orbit", Proceeding of the 21st Colloquim on the Law of Outer Space, 1978, p.13.

40) Chicago Convention art.1: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e thar every state has complete and exclusive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above its territory."

1958년 국제법협약(ILA) 총회에서 1944년 시카고협약이 제1조에서 사용한 airspace라는 말은 정확히 대기권(atmospheric space)과 동의어로 본다고 결의한 바 있고⁴²⁾ 따라서 이 학설은 airspace를 이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국가주권은 대기권을 한계로 제한되고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⁴³⁾

그러나 이 설은 지구 주위의 대기권에 대해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천체물리학적 견지에서 보면 대기권은 지표로부터 대류권(troposphere: 약 10km까지), 성층권(stratosphere: 10~40km), 전리층(ionosphere: 40~375 km) 그리고 외기권(exosphere: 375~20,000km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⁴⁴⁾ 이 가운데 외기권에서는 분자 입자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 층에서 우주공간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 통상 이 층의 상한으로 대기권의 경계획정을 시도하는 것이지만⁴⁵⁾ 실제로 최근의 인공위성 관측 결과에 의하면 10만km 상공에도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관찰된 바도 있고 또한 대기란 것은 유동성이 있어 이동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관계로, 동 이론이 이에 기해 조금이라도 대기가 있는 상공에까지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치는 영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⁴⁶⁾

다. 공기역학적 부양력설(Theory of the Aerodynamic lift)

이 학설은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특징에 의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획하려는 시도로서 이른바 「유효한 공기」 개념을 상정한, 시카고협약의 부속서 등에 포함된 항공기의 정의에 그 바탕을 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시카고 협약은 그 부속서에서 항공기를 “대기권에서 공기의 반동으로부터 부양력을 얻을 수 있는 기계”라고 정의하였고⁴⁷⁾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Oscar Schachter 교수도 “영공은

41) E.R.C. Van Bogaert, *Aspects of Space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p.12.

42) ILA, *Report of the 48th Conference(1958)*, 1959, p.330.

43) *The Question of the Definition and/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Background Paper U.N. Doc. A/AC.105/C.2/7, 7 May 1970, para.101.

44) Nicolas M. Matte, *op.cit.*, p.22. and Soil K.Cooper, *op.cit.*, p.9.

45) Background Paper, *supra* note 43, para. 105.

46) Stephen Gorove, *Studies in Space Law : Its Challenges and Prospects*, 1977, p.18.

47) Annex 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Fifth Edition, July 2003, p.1.

앞서의 파리 및 시카고 협약에서도 언급됐듯이 항공기의 부양력을 얻을 수 있는 대기권의 상한 이내로 제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⁸⁾ 공기저항에 의한 부양력 관념은 흔히 항공기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항공기와 우주물체를 구별하기 위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는 바 항공기의 최대 비행고도문제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의 부양력의 한계는 원래 40~50km 정도(약30mile 정도)이지만 이 경우도 항공기 기술은 공기의 희박도를 극복하고 급속한 발달을 이룸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그 상한은 항공의 가능성에 의거하여 구분되어 저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바⁴⁹⁾ 오늘날 공기역학상의 항공기 비행은 약 65km 정도의 고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⁰⁾ 그러나 이것은 기술의 발전과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기술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경계도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경계는 언제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더구나 그러한 경계의 상하를 넘나들며 운항하는 비행체가 등장하고 특히 항공기와 우주선의 구분도 모호해진 측면이 있는 현시점에서는 어떤 것이든 확실성이나 영속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라. Von Karman 라인 경계이론

앞서의 항공기 비행고도의 연장선적 맥락에서 말하자면 공기역학적 부양력이 없어지고 원심력이 일어나는 높이를 공역주권의 상방한계로 삼자는 입장으로서는 이는 항가리게 미국물리학자 Theodore von Karman이 처음 주창하여 이름 붙여진 이론이다. 일찍이 Haley도 이 견해에 적극 동조하면서 원심력이 일어나는 이 Von Karman선을 영공과 우주의 경계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⁵¹⁾ 이 Von Karman경계선은 당초에는 1초에 25,000feet(약7km)를 비행할 수 있는 물체가 그 공기역학적 추진력을 상실하고 궤도속도에 도달하여 원심력이 작용하는 높이를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대체로 지표로부터 약 275,000 feet(약 83km) 상공 지점이 된다고 하였던 바⁵²⁾ 현재는 이를 해발 100km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48) O.Schachter, A Preview of Space Law Problem, Warning : Early Unilateral, U.S. Congress, Legal Problems og Space Exploration, a Symposium, Washington, 1961, p.347.

49) 坂本昭雄, 三好晉, 新國際航空法, 1999, pp.22-23.

50) U.N. Doc. A/AC.105/C.2/2014/CRP.6, 17 March 2014, para. 3.

51) Andrew G. Haley, Space Law and Government, Appleton-Century-Crofts, New York, 1963, pp.98-99.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Kepler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 이론은 지상에서 이 고도까지의 공역을 영공의 범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³⁾ 이 Von Karman 라인 기준도 기술발전의 정도에 관련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공위성의 선회궤도가 이 라인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한 정의로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 평가되기도 하며⁵⁴⁾ 또한 국제항공연맹(FAI)이 지지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제항공연맹(이하,FAI)은 항공비행(aeronautics)과 우주비행(astronautics)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폰 카르만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표에서 고도 100km를 경계획정의 판단지표로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⁵⁵⁾

이 이론은 현재 우주공동체에서 다수의 조직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⁶⁾ 그러나 Von Karman라인도 이와 같이 일정한 평가를 받고는 있었으나 한편으로 여기서 설정된 경계라는 것도 나름의 근거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선택된 기준인데,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다른 요인(예,속도)이나 대기의 상태에 따라 설정된 고도가 변화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리학자간에도 정확한 위치에 대한 견해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의 면에서 다른 학설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⁵⁷⁾

52) 2014년 러시아가 제출한 우주공간의 경계문제에 관한 답변서에서도 폰 카르만라인이 설정되는 숫자는 해발 83km로 표시되어 있다.

U.N. Doc. A/AC.105/C.2/2014/CRP.6, 17 March 2014, para. 5.

53) Ibid.

And M.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980, p.184.

Lubos Perek, "Scientific Criteria f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Journal of Space Law, Vol.5. Nos.1&2, 1977, p.122.

54) Lubos Perek, supra note 53, p.123.

55) S. Sanz Fernández de Córdoba, 100km Altitude Boundary for Astronautics, 25 May 2012. <http://www.fai.org/icare-records/100km-altitude-boundary-for-astronautics>.

56) Matthew J. Kleiman, op.cit., American Bar Association, 2013, p.XII.

57) 이영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p.98.

마. 삼분설(Three Zones Theory)

일찍이 미국국제법학회에서 Cooper는 상공을 삼분하여 하토국의 주권행사에 차등을 두자는 이른바 삼분설을 제창한 바 있는데 국가의 상공을 영공(territorial space),접속공(contiguous space) 그리고 우주공간(outer space)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하토국의 주권행사에 차등을 두려는 학설이다. 국가는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고도까지의 공간에 대하여 완전,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그 상방으로부터 30mile까지는 접속공이라 명명한 다음 비군사용 항공기의 통과권만을 인정하며, 그 이상의 상방공간에 대해서는 우주로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자유로이 개방한다고 주장을 담고 있다.⁵⁸⁾ 이 학설은 해양법의 접속수역 이론을 공역에 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최근의 학자로는 Oduntan을 들 수 있다. G. Oduntan은 동 방식이 엄격한 경계의 효력을 완화시킨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여 이 이론을 권장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낮은 구역은 약55마일(88km)까지로 하고 그 구간범위내에서 영공의 최대 고도를 인정하여 하토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에 따르도록 하고, 그 상방의 45마일(72km)은 이른바 완충구역(buffer zone)으로서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통과권을 보장해 주는 공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해면에서 100마일(160km) 정도의 경계선에서 우주공간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는 주권 및 관할권에 관한 모든 주장이 배제된다고 보는 이론이다.⁵⁹⁾

지금까지의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획정의 개념은 설정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영공의 바로 상부에 우주공간이 존재한다는 식의 이른바 이분법적인 공간획정 방식이었다. 이에 반해 이 개념은 공간을 몇 개로 분할하여 양자 사이에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일정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경계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⁶⁰⁾

국제법협회(ILA)에서도 이 3개로 나누는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적이 있다. COSPAR의 대표가 지구상공의 공간을 3개로 나누어 해면에서 50km까지는 하토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50~100km까지 사이에

58) John C. Cooper, "Legal Problem of Upper Space"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Vol.23, 1956, pp.308~309.

59) Gbenga Oduntan,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and Outer Space, 2012, p.310.

60) Background Paper, supra note 43, para. 151.

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적용되는 중간구역(mesospace)으로 설정하고, 100km 이상을 우주공간으로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별다른 동조를 얻지 못했다.⁶¹⁾ 과거에는 이 개념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며 관심을 끈 적이 있었으나 오늘날 국제공동체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는 영공의 상한 또는 우주공간의 하한만 설정하려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일정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카자흐스탄과 같이 UN의 틀 안에서 어느 한 쪽만의 경계라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국가도 있긴 하다.⁶²⁾ 그러나 최근까지 우주공간의 영역구분문제가 다루어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영공과 우주공간의 2분법적 경계설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역을 영공과 우주공간으로 2분하여 각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별을 하는 편이, 여러 가지 형태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것보다 많은 점에서 타당하고 또한 실제적이기도 하다고 보는 입장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분설에 대해서는 영공이 하토국가의 공역으로서 우주공간의 하한까지는 엄연히 국가주권이 미치지 때문에 우주공간의 정의와 영공의 높이 문제와는 별개로 분리하여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따라서 이점에서 우주공간의 하한은 자동적으로 영공의 상한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⁶³⁾

바. 위성궤도 최저근지점설(Theory of Lowest Perigee)

이 이론은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인공위성은 우주공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구 표면으로부터 인공위성 궤도비행의 최저 높이인 약 100km 상공이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가 된다고 주장한다. 지구 주변 궤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은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한다. 이때 지구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곳을 근지점이라 한다. 근지점 중에서도 지

61) D. Goedhuis, ILA Committee on Space Law, Report of the 59th Conference, 1980, p.175.

62) Questions on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U.N. Doc. A/AC.105/889/Add.11, 28 January 2013, p.5.

63) He Qzhi, "The Problem of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Journal of Space Law, Vol. 10, No. 2, 1982, p.160.

구의 대기가 짙어져 인공위성이 더 이상 궤도를 돌기가 어려운 한계가 되는 높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견해가 이른바 최저근지점설이라는 개념이다.⁶⁴⁾

이 설의 이론적 근거는 국가들의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물체의 궤도비행을 묵시적으로 승인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많은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관행을 바탕으로 국제법의 일부로서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⁶⁵⁾ 일찍이 Bin Cheng도 “우주공간은 인공위성이 자유로운 궤도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일반적 관행이 국가들 간에 성립되어 왔다고 하면서 그 경계는 약 25mile 정도의 유동적인 경계권 (possible margin)을 인정하면서 대략 50mile 정도”라고 한 바 있다.⁶⁶⁾ 이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는 다른 개념과 비교해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우주조약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의 하나인 자유로운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 요구가 만족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궤도상에 발사된 모든 위성이 우주공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동시에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 있었던 것이 된다.⁶⁷⁾ 둘째, 민간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최대고도보다 상부에 경계선이 설정되기 때문에 항공교통과 우주활동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갈등요소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지구궤도상을 선회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대해 어떤 국가도 영공침범 등의 이유로 항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실행에도 적합한 것이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지구주변 궤도상을 선회하는 우주물체에 대해 하방국가의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근지점보다 위의 공간은 우주공간이라는 것을 각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되었거나, 적어도 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⁶⁸⁾ 물론 이 최저근지점설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

64) Background Paper, supra note 43, para. 130.

65) Carl.Q.Christol,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A Report at the Conference on Law and Life in Space held at the Center for Aerospace Science, Univ. of North Dakota, Space Policy, 1987.2, p.68.

66) Bin Cheng, “The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Current Legal Problems, Vol.18, 1965, pp.145~146.

67) He Qizhi, supra note 63, p.160.

68) Katherine M. Gorov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nd the Aerospace Object,” Journal of Space

나 다른 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발전에 따라 또는 인공위성의 운용 목적과 크기, 수명 등에 의해 더 낮은 궤도에서도 위성이 선회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⁶⁹⁾ 우주공간과의 경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동 학설이 주장하는 최저근지점의 ‘최저’ 개념의 의미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지구궤도를 선회한 인공위성 중 기술적으로 가장 낮은 궤도를 기록한 위성이 예외적으로 있다고 하여도 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실행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많은 위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궤도들 가운데 가장 낮은 궤도높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한 해석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우주항행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최저근지점 이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용가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기능적 접근방법(Functional Approach)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 획정문제에 대해서는 방법론상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앞서 본 공간적 방식이고 나머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능적 방법이다. 물론 앞서 논한 바와 같이 60년대를 지나면서 공간적 방식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능론적 접근방법도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꾸준히 주장되고 있다.⁷⁰⁾ 말하자면 이것은 국가주권의 상방한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공간론적 방식에 의할 때 안정적인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론들이다.⁷¹⁾ Matte교수는 몇 가지 특징을 들어 기능주의를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양측 간의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기껏해야 중재적인 것이거나 보장되지 않는 구역 구분이 될 것인즉 공간적으로 측정된 기준에 따라 우주공간의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을 우선해서 고려하여야

Law, Vol. 28, No. 1, 2000, pp.11-12.

69) 우주연구위원회(Committee on Space Research)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Jaeger교수는 몇몇 인공위성은 최저근지점이 90km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p.87.

70) Bin Cheng, "The Legal Reime of Airspace and Outer Space:The Boundary Problem, Functionalism v/s Spatialism:The Major Premises", Annals of Air and Space Law, Vol.V, 1980, P.323.

71) Background Paper, supra note 43, para. 162.

한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평화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이나 등에 관한 이용목적의 성질여하와 하토국에 미치는 위험성 여부에 그 표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²⁾ 한편 또 다른 기능주의자들인 Mcdougal과 Lipson 교수는 우주에 관한 당시의 과학적 진전 상태에서 고정적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야기되는 갖가지 난점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문제성이 있는 경계선의 설정보다는 관련된 모든 요인을 참작하여 우주가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느냐 하는 실제 활동이나 기능의 문제에 주목하고⁷³⁾ 성급한 국제조약의 체결은 시기상조이며 동시에 국가안전과 우주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의 정신에 반한다고까지 하였다.⁷⁴⁾ 결과적으로 이 이론은 비행위치나 높이가 공역주권의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물체의 종류와 목적하는 활동에 따라 기능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기능주의로 지칭되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법의 기본적 이념에 대해서도 ‘우주활동은 국제사회의 전반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며 또한 우주활동의 합법성 여부도 개개의 우주활동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⁷⁵⁾ 결국 이들 주장은 우주과학기술이 나날이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장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만족시킬 마술적 해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 부질없는 것이라는 점이 그 요지이다.

기능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특정의 경계고도설정이라는 수량적인 설정을 하지 않는 순수한 기능주의는 우주물체의 활동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통상 어떤 물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기능주의에서는 ‘우주활동(space activity)’, ‘우주비행(space flight)’ 등을 정의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이것은 단순히 높이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⁷⁶⁾ 이 주장은 세계국제법협회(ILA)에서

72) Nicolas M. Matte, *Aerospace Law*, Sweet and Maxwell, London, 1969, pp.62~64.

73) Myres Mcdougal and Leon Lipson, "Perspective for a Law of Outer Space", *A.J.I.L.*, Vol.52, 1958, pp.352~353.

74) *Ibid.*, p.407. And Bin Cheng, *op.cit.*, 1980, pp.323~324.

75) 城戸正彦, *空域主權の研究*, 風間書房, 1981, p.450.

또한 E.R.C. Van Bogaert, *Aspects of Space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pp.4~5. 그 외에 기능설에 동조하는 Stoebner나 Gal등의 소론에 관해서는 Carl Q. Christol, *op.cit.*, pp.503~504 참조.

76) Katherine Gorove and Elena Kamenetskaya, "Tens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Outer Space," in Damrosch, Danilenko and Müllerson (eds.), *Beyond Confrontation: International Law for the Post-Cold War Era*, 1995, p.245.

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동 협회에서는 우주활동의 종류만을 판단 재료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활동이 행해진 장소가 중요하다는 점이 우주조약 제8조의 규정을 들어 예로 들어 강조되었다.⁷⁷⁾

이는 결국 우주물체의 목적이나 기능을 검토하여 그들의 제반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장치나 조약의 구비를 그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으며 또한 분쟁의 해결을 회피하여 새로운 불씨를 남김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평가

앞에서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문제와 관련하여 UN의 배경문서와 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요 학설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기능론자의 입장은 전술한 것처럼 우주물체의 목적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우주활동을 규율하자는 논지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활동 등에 관한 또다른 정의를 필요하고 특히 우주물체에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그 정의는 보다 복잡한 것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씨를 야기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공간적 접근방식에도 각 학설 나름의 허점이나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가운데서도 다수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위성 최저근지점 기준과 관련하여 그것보다 상부의 공간은 우주공간으로 본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으로 응고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최저근지점을 경계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가운데에서도 고도 100km 또는 110km를 경계로 하는 의견 등 논자나 국가에 따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간주의적 방식의 경계가 정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고도의 설정이 요구된다.

물론 경계획정만으로써, 이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종류의 법적 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각 국가들의 대표가 모여 합의를 이룸으로써

77)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ommittee on Space Law, Report of the 58th Conference, 1978, p.163.

이에 관련된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경계 획정이 이루어진다면 보고타 선언과 같은 우주공간에 대한 주권 주장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요컨대 우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우주공간의 한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경계획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⁷⁸⁾ 대다수의인공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궤도비행을 할 수 있는 최저높이 (대략 100~110km)에서부터 우주공간이 시작된다는 견해가 비교적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국가 관행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특히 당면한 지구정지궤도 이용, 안전보장, 오염방지, 질서유지 및 경제적 이용의 규제 등 실제적 요구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Ⅲ. 주요국가의 입장

1. 미국

지금까지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에 대한 각국의 기초는 대체로 영역구분론적 입장에서 경계획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가, 기능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국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선도적인 우주개발국인 미국을 필두로 몇몇 주요국가의 태도에 관해 핵심적 주장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획정에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⁷⁹⁾ 1979년 당시 소련이 100-110km 고도를 경계선으로 하자는 제의를 했을 때 미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을

78) 해양이긴 하나 경계획정의 실패로 인해 생겨난 문제의 좋은 사례로 Bin Cheng 교수는 1968년 한 반도 해역에서 일어났던 Pueblo호 사건을 예로 든 바 있다.

Bin Cheng, "The Pueblo Seizure : Facto, Law, Polic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69, p.1.

79) Carl Q. Christol,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1982, p.447.

기초로 하여 경계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주장을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금 우주의 정의를 내려야 할 법적, 기술적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다. 2)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결정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3) 경계선을 미리 설정했다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수의 우주활동이 지연되었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다. 4) 국제공동체는 유의미한 우주정의를 확정할 많은 과학적, 법적, 기술적, 정치적 요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⁸⁰⁾ 이 입장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계획정문제에 대해 법률소위원회에 보낸 다음과 같은 공식문서를 통해서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요지는 영공 및 우주공간의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제도는 각각의 범위에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으며 우주공간의 정의 또는 경계가 없어도 각각의 범위에서의 활동이나 발전을 해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가능고도가 상승되고 있는 반면, 우주선 궤도상의 선회고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경계선을 설정함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경우 양자 간에 인위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⁸¹⁾

2. 러시아

러시아는 초기에는 기능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1979년 법률소위원회에 최초로 작업문서를 제출하면서 공간적 경계획정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해발 100(110)km 이상의 지구 주변 공간은 우주공간이어야 한다. 2) 대기권공역과 우주공간 사이의 경계는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그 후에 해발 100(110)km를 넘지 않는 고도에서 조약을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3) 제국의 우주물체는 해발 100(110)km 이하의 고도에서 궤도에 진입하거나 발사국의 영토에 귀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80) U.N. Doc. A/AC.105/PV. 193, 1979, p.47.

81) U.S. Statement,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nd the Character and Utilization of the Geostationary Orbit, Legal Sub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at its 40th Session. U.N. Doc. COPUOS/LEGAL/T.826, 31 March 2011, p.4. <http://www.state.gov/s/1/22718.htm>.

국의 영토상공을 비행할 권리를 갖는다.⁸²⁾ 나아가 소련은 해발고도 100(110)km는 확립된 관행에 입각한 것이고 과학, 기술적인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므로 이 제안이 UN총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⁸³⁾ 이러한 소련의 입장은 1983년에 제출한 2번째 작업문서에서 해발 100(110)km를 초과하지 않는 고도에서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구속력 있는 문서로 경계를 설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재확인되었다.⁸⁴⁾ 러시아는 금세기에 들어서 2012년에도 그동안 일련의 작업문서를 통해 해발 100~110km를 넘지 않는 고도에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⁸⁵⁾ 이처럼 러시아는 100~110km 고도의 동일한 기준으로 수차례에 걸쳐 작업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우주공간의 경계획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최근 2014년에 들어와 실용적인 레벨에서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각국은 현행 방식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소극적인 태도를 내비친 바가 있는데⁸⁶⁾ 이점은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3. 프랑스

프랑스는 1967년까지 경계구분을 주장하며 관련되는 일련의 제안을 하였고, 우주공간의 정의가 부족하기는 하나 우주법을 적용할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계획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구소련과 같이 100~110km를 넘지 않는 고도에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⁸⁷⁾ 그러나 프랑스는 그 이후에 태도를 바꾸어 우주를 정의하거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우주에 도달하는 모든 물체는 그 목적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주물체로 본다는, 우주활동에 관한 기능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예로 제51

82) U.N. Doc. A/AC.105/C.2/L.121, 26 March 1979, p.1.

83) U.N. Doc. A/AC.105/PV. 232.

84) U.N. Doc. A/AC.105/C.2/L.139, 4 April 1983, p.1.

85) U.N. Doc. A/AC.105/889/Add.10, 24 January 2012, p.5.

86) U.N. Doc. A/AC.105/C.2/2014/CRP.6, 17 March 2014, p.3.

87) U.N. Doc. A/AC.105/C.2/SR.316

차 법률소위원회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저궤도 여행’과 같이 항공활동과 우주활동의 경계선상에 있는 활동의 범주를 사례별로 연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는 우주의 경계를 엄격히 획정할 필요가 없이 각각의 운항이 그 성격상 우주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공통된 접근방식의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⁸⁾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UN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에 관한 자국의 국내우주법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동 문서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1998년에 우주활동법(Space Activities Act)을 제정했던 바 거기에는 우주공간의 정의 자체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주물체’ 등의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주공간’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동 법은 ‘우주물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⁸⁹⁾

‘우주물체는 이하의 것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a) 발사기 및 (b) 발사기가 우주공간을 향해 또는 우주공간에서 운반되는 페이로드(payload) 또는 이하와 같은 것의 일부 (c) 그 일부가 우주공간을 향해 또는 우주공간에서 돌아오는 경우 또는 (d) 그 일부가 발사 후에 발사기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페이로드가 분리된 결과로 발생한 경우’.

그 후 2002년에는 우주공간에 관한 의미있는 개정이 이루어져, ‘우주공간’으로 표기된 곳이 모두 ‘해발 100km를 넘는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⁹⁰⁾ 그러나 이 변경후에도 동 법에서는 우주공간 자체에 대한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와 관련하여 ‘해발 100km를 넘는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개정된 것은 법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주공간의 정의 또는 경계를 설정하려는, 국가차원의 공식적

88)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p.107.

89) Space Activities Act 1998, Act No.123 of 1998, Section8,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4C06879>.

90) Space Activities Act 1998, Act No.123 of 1998 as amended, Section8,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0C00193>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⁹¹⁾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우주공간의 정의에 대해 UN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이것은 현재의 우선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⁹²⁾ 이로 미루어 볼 때 동 규정만을 근거로 오스트레일리아가 해발 100km라는 기준을 우주공간의 경계로 설정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우주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다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⁹³⁾

5. 영국

영국은 1959년 우주평화이용위원회의 창립회원국으로서 일찍부터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초창기에서부터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평가된다.⁹⁴⁾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영국은 지난 2010년의 UN 제출문서에서 우주공간의 경계를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기공간과 우주공간 양방에 있는 물체에 의해 수행되는 임무에 관련된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에 관한 법률소위원회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려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보여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와 관련해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⁹⁵⁾

국내법상의 태도와 관련하여 영국은 지난 1986년 국내 우주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동 법의 제1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a)우주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발사시키는 것, (b)우주물체를 운용하는 것, (c)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 자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⁹⁶⁾ 다만, 1999년에 영국의 상원(House of Lords)에서 국가 영공의 상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영공

91) U.N. Doc. A/AC.105/865/Add.1, 20 March 2006, para. 6.

92) U.N. Doc. A/AC.105/865/Add.11, 21 February 2012, p.2.

93) 이 국내법을 토대로 우주공간은 해발 100km 상공부터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Ram Jakhu,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2005, p.56.

94) Christol, *supra* note 79, p.473.

95) U.N. Doc. A/AC.105/889/Add.8, 23 November 2010, p.3.

96) 龍澤邦彦 監修, 原典宇宙法, 中央學院大學 地方自治センター 編, 1999, p.420.

의 상한에 대한 실효성을 가진 정의는 현재 없으나, 실제적인 목적 수행과 관련하여 그 한계는 적어도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높이로 생각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⁹⁷⁾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영국이 공식적으로 영공의 구체적인 상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유사하게 공간주의적인 방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되고 장차에는 영공의 상방한계에 대한 영역구분론적 태도를 보일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IV. UN COPUOS에서의 논의 과정 개관과 최근의 논의동향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문제는 일찍이 COPUOS 설립당시부터 기타사항의 의제에 포함은 되어 있었으나 이후 상당기간동안 주요 이슈가 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당시의 우주개발상황과 우주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는 국제적 합의 자체가 시기상조였을 뿐 만 아니라 그즈음에 논제가 된 COPUOS의 주요현안들의 문제해결에 경계문제가 법적으로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다.⁹⁸⁾

이후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목전의 주요 현안이었던 우주조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966년 프랑스와 멕시코의 문제 제기로 재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는 제5차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공간의 경계가 시급히 구분되지 않으면 일부 우주활동에 있어서는 우주조약의 시행에 곤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던 바 이에 따라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 문제가 COPUOS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이듬해 제6차 법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⁹⁹⁾ 그런

97)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199899>

98) U.N. Doc. A/4141,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p.25.

99) U.N. Doc. A/AC.105/C. 2/SR. 71, 1966. p.39.

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학자와 과학기술자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프랑스의 요청에 의거, 우주의 정의 도움이 될 과학적 기준의 리스트와 그 기준의 선정에 대한 과학기술소위원회의 의견 및 장·단점을 기술해 달라는 문제에 관해 1968년 제6차 법률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기술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은 우주의 연구와 탐사에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¹⁰⁰⁾ 그러나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 문제는 시간의 부족과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배상문제와 우주물체 등록 등에 관한 입법작업과 같은 시급한 의제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바람에 1970년에서 1976년까지 사실상 심의가 중단되었다가 앞서의 보고타 선언이후 지구정지궤도문제를 포함시키면서 논의가 재개되었고 1978년 제17차 회기에서 정지궤도 문제도 정식의제에 포함되었다.¹⁰¹⁾ 이후 COPUOS에서의 논의는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1983년에는 이 문제를 전담해 다루기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좀 더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 있는 구소련의 공간론적 경계획정 의견이 제출되어 논의가 행해진 것도 이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작업문서 제출을 통해서였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입장이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에 대한 경계획정의 필요성과 그 방식에 관한 각 국가들의 의견이 찬반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나뉘어 개진되었음도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다. 특히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의 의제는 1999년에 개최된 우주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3차 UN회의(UNISPACE III)를 통해 보다 정형화 내지 체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회의에서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OPUOS와 관계 소위원회의 의제설정과 작업방식을 새롭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¹⁰²⁾ 이에 따라 법률소위원회는 의제 설정을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는

100) U.N. Doc. A/AC.105/39, para.36.

박원화·정영진, *op.cit.*, 2012, p.105.

101)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p.140.

102) U.N.G.A. Resolution 45/68.

법적 쟁점의 성격과 우주활동 범주의 탐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¹⁰³⁾ 이러한 맥락에서 법률소위원회는 이후 의제를 정규의제와 단일 의제 그리고 복수년 의제 및 신규 의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가지 형태의 안건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법률소위원회의 의제는 여러차례의 변경이 행해졌는데, 여기서는 참고로 2014년과 2015년의 의제가운데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과 관련한 정규의제의 목록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려고 한다.¹⁰⁴⁾

I. 정규의제

- 의장성명
- 일반적인 의견교환
- 우주법 관련 정부간 국제기구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보
- UN 우주관련 5개 조약의 현황과 적용
-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 및 정지궤도의 성격과 이용에 관한 문제
-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에 관한 국내법
- 우주법 역량 구축

이처럼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 1967년 이후 이 문제를 정식 어젠더(agenda)로 설정하여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심의하고 있음에도 미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먼저 과학적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십년간 토의만을 거듭하였다. 그런 가운데 법률소위원회는 그동안의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문제에 관한 배경문서 및 그 추가분을 작성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제안된 경계획정 방안을 정리하여 10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⁰⁵⁾ 또한 그 이후에도 2002년에 법률소위원회는 이 과제에 관한 심의경과와 내용을 종합한 ‘우주공간의 정의 및 경계에 관한 문제의 고찰에 관한 역사요약서’를 간행

103) U.N. Doc. A/45/20. p.17.

104) 정영진, *supra* note 101, p.138에서 재인용.

105) The Question of the Definition and/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Background Paper (Addendum), U.N. Doc. A/AC.105/C.2/ 7/Add.1, 21 January 1977.

한 바 있는데¹⁰⁶⁾ 이들 문서는 동 문제를 고찰하는데 참고자료로서의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세기에 들어 우주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우주개발과 이용에 참가하는 국가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 및 정지궤도의 성격과 이용에 관한 작업그룹은 2009년 법률소위원회에 참석한 회원국들에게 동 문제의 진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한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제시한 바 있다.

- 1) 현재의 우주활동과 항공활동의 수준 및 우주 및 항공기술을 고려할 때, 우주의 정의 및 우주와 영공의 경계획정이 필요한가?
- 2)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
- 3) 우주의 하부와 영공의 상부를 정의내리기 위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들 질문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오랜 COPUOS 논의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한 수준을 넘진 못하지만 특히 두 번째 질문에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기존의 공간주의적 접근과 기능주의적 접근의 틀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보려는 COPUOS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⁷⁾

V. 맺음말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어 왔는데 이는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

106) Historical Summar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on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U.N. Doc. A/AC.105/769, 18 January 2002.

107) 박원화·정영진, op.cit., 2012, p.106.

(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 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타선언 이후 법적 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적도국가들의 주장은 결국 우주공간의 경계에 대한 국제법상의 구체적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하는 일부의 태도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국가에 의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그 과정에서 COPUOS법률소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그동안 주장되어 왔던 내용을 정리하여 동 문제에 관한 배경문서를 간행하면서 10가지의 경계획정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경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앞으로도 분쟁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일국의 우주물체가 타국의 영공을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의 원인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¹⁰⁸⁾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구소련을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분명한 기준

108) Bin Cheng,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Journal of Space Law*, Vol. 19, No. 1, 1991, p.24.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¹⁰⁹⁾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건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종복, 신 우주법, 한국학술정보, 2011.
 노명준, “우주법에 관련된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9권 제2호, 1964.
 노명준, “우주공간의 국제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Vol.16, 1983.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2.

109) President John F. Kennedy, Moon Speech at Rice University in 1962.

- 서희원,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제1호, 1970.
- 신성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에 대한 항공/우주법적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2002.
-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국제법Ⅱ, 일조각, 2003,
- 이영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임덕규, “우주공간의 법질서,” 우암 양준모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2.
- 장효상, “위성직방송에 대한 중·장기대책과 그 법적 측면”, 국제법학회논총, 제 30권 제2호, 1985.
-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외국문헌>

- 龍澤邦彦 監修, 原典宇宙法, 中央學院大學 地方自治センタ- 編, 1999.
- 城戸正彦, 空域主權の研究, 風間書房, 1981.
- 坂本昭雄, 三好晉, 新國際航空法, 1999.
- A.E.Gotlieb,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1981-1.
- Andrew G. Haley, *Space Law and Government*, Appleton-Century-Crofts, New York, 1963.
- Annex 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Fifth Edition, July 2003.
- Bin Cheng, "From Air Law to Space Law", *Current Legal Problems*, Vol.13, 1960.
- Bin Cheng, "The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Current Legal Problems*, Vol.18, 1965.
- Bin Cheng, "The Legal Reime of Airspace and Outer Space : The Boundary Problem, Functionalism v/s Spatialism:The Major Premises", *Annals of Air and Space Law*, Vol.V, 1980.

- Bin Cheng,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Journal of Space Law*, Vol. 19, No. 1, 1991.
- Bin Cheng, "The Pueblo Seizure : Facto, Law, Polic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69.
- C. Wilfred Jenks, "The International Control of Outer Space", *Legal Problem of Space Exploration: A Symposium*, 1961.
- Carl. Q. Christol,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1982.
- Carl. Q. Christol,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A Report at the Conference on Law and Life in Space held at the Center for Aerospace Science, Univ. of North Dakota, *Space Policy*, 1987.2.
- D. Goedhuis, *ILA Committee on Space Law, Report of the 59th Conference*, 1980.
- E. Fasan, *Weltraumrecht*, 1965.
- E.R.C. Van Bogaert, *Aspects of Space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 1986.
- G. Tunkin, An opening statement before the Legal Sub-Committee of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1962. 5. 28.
- Gbenga Oduntan,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and Outer Space*, 2012.
- H. Lauterpacht, "The Grotian Tradition in International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56.
- He Qzhi, "The Problem of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Journal of Space Law*, Vol. 10, No. 2, 1982.
- Historical Summar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on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U.N. Doc. A/AC.105/769, 18 January 2002.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6th ed., Clarendon Press, Oxford, 2003.
- ILA, *Report of the 48th Conference(1958)*, 1959.
-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ommittee on Space Law, *Report of the 58th Conference*, 1978.

- ITU, Broadcasting Conference, Doc.No.81-E(January 17, 1977), Annex 4.
- J.F.McMahon, "Legal Aspects of Outer Spac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8, 1962.
- Jeffert Prevost, "Law of Outer Space", Cleveland State Law Review, 1980.
- Jessup and Taubenfeld, Controls for Outer Space, 1959.
- John C. Cooper, "Legal Problem of Upper Space"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Vol.23, 1956.
- Katherine Gorove and Elena Kamenetskaya, "Tens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Outer Space," in Damrosch, Danilenko and Müllerson(eds.), Beyond Confrontation: International Law for the Post-Cold War Era, 1995.
- Katherine M. Gorov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nd the Aerospace Object," Journal of Space Law, Vol. 28, No. 1, 2000.
- Korovin, "International Status of Cosmic Space", International Affairs, 1959.
- Lubos Perek, "Scientific Criteria f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Journal of Space Law, Vol.5. Nos.1&2, 1977.
- M.Akeh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980.
- Manfred Dauses, Die Grenze zwischen Luftraum und Weltraum als Gegenstanden rechtlicher Regelung, Wurzburg, 1969.
- Matthew J. Kleiman, The Little Book of Space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3.
- Myres Mcdougal and Leon Lipson, "Perspective for a Law of Outer Space", A.J.I.L., Vol.52, 1958.
- Nicolas M.Matte, Aerospace Law, Sweet and Maxwell, London, 1969.
- O.Schachter, A Preview of Space Law Problem, Warning : Early Unilateral, U.S. Congress, Legal Problems og Space Exploration, a Symposium, Washington, 1961.
- Ogunsola O. Ogunbanwo, International Law and Outer Space Activities, Martinus Nijthoff, 1975.

- Philip W.Quigg, "Open Skies and Open Space", 37 Foreign Affairs, 1958.
- President John F. Kennedy, Moon Speech at Rice University in 1962.
- Questions on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U.N. Doc. A/AC.105/889/Add.11, 28 January 2013.
- R.Arzinger, "The Use of the Geostationary Orbit", Proceeding of the 21st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1978.
- Ram Jakhu,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2005.
- Ram S. Jakhu, "The Legal Status of the Geostationary Orbit", A.A.S.L., Vol.7, 1982.
- S. Sanz Fernández de Córdoba, 100km Altitude Boundary for Astronautics, 25 May 2012.
- Soli K.Cooper, The Geostationary Orbit, Problems and Possibilities, 1982. 4.
- Stephen Gorove, Studies in Space Law : Its Challenges and Prospects, 1977.
- The Outer Space Treaty, Art.2.
- The Question of the Definition and/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Background Paper (Addendum), U.N. Doc. A/AC.105/C.2/ 7/Add.1, 21 January 1977.
- The Question of the Definition and/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Background Paper U.N. Doc. A/AC.105/C.2/7, 7 May 1970.
- U.N. Doc. A/4141,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U.N. Doc. A/45/20.
- U.N. Doc. A/AC.105/865/Add.1, 20 March 2006.
- U.N. Doc. A/AC.105/865/Add.11, 21 February 2012.
- U.N. Doc. A/AC.105/889/Add.10, 24 January 2012.
- U.N. Doc. A/AC.105/889/Add.8, 23 November 2010.
- U.N. Doc. A/AC.105/C. 2/SR. 71, 1966.
- U.N. Doc. A/AC.105/C.2/2014/CRP.6, 17 March 2014.

U.N. Doc. A/AC.105/C.2/L.121, 26 March 1979.

U.N. Doc. A/AC.105/C.2/L.139, 4 April 1983.

U.N. Doc. A/AC.105/C.2/SR.316

U.N. Doc. A/AC.105/PV. 193, 1979.

U.N. Doc. A/AC.105/PV. 232.

U.N.G.A. Resolution 45/68.

U.S. Statement,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nd the Character and Utilization of the Geostationary Orbit, Legal Sub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at its 40th Session. U.N. Doc. COPUOS/LEGAL/T.826, 31 March 2011.

UN Doc. A/4141.

UN Doc. A/AC. 105/358, 1986.

UN Doc. A/C.195/37,para. 18.

UN G.A.Res. 1962(XV111), Dec.13, 1963.

W.Friedman, Lissitzyn and Pugh,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1969.

Y. Blum, Historic Titles in International Law, 1965.

초 록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건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영역구분론자, 기능주의자, 법률소위원회, 최저근지점

Abstract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Lee, Young-Jin*

To date, we have considered the theoretical views, the standpoint of states and the discours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regarding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first issues of UN COPUOS established in line with marking the starting point of Outer Space Area. As above mentioned,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and among scholars of within each state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often saw a division between those in favor of a functional approach (the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the spatialists). The spatialists emphasize that the boundary between air and outer space should be delimited because the status of outer space is a type of public domain from which sovereign jurisdiction is excluded, as stated in Article 2 of Outer Space Treaty.

On the contrary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evidence of the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as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the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demarcation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 whether for peaceful or non-military purposes, considered it insufficient or inadequate to delimit a boundary of outer space without obv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vidences. Last more than 50 years there were large development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But a large number states including

*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ose taking the view of a functionalist have taken on a negative attitude.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seems therefore to welcome the arrival of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and national practices concerning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large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Russia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st perigee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As a matter of fact the lowest perigee where space objects are still able to continue in their orbiting around the earth has already been imposed as a natural criterion f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Thi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has also been evidenced by the constant practice of a large number of States and their tacit consent to space activities accomplished so far at this distance and beyond it. Of course there are still numerous opposing views on the delineation of a outer space boundary by space powers like U.S.A., England, France and so on.

Therefore, first of all to solve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like delimitation problem, there needs a positive and peaceful wil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is viewpoint, President John F. Kennedy once described the rationale behind the outer space activities in his famous "Moon speech" given at Rice University in 1962. He called upon Americans and all mankind to strive for peacefu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our future outer space activities. And Kennedy explained, "There is no strife,.... nor any international conflict in outer space as yet. But its hazards are hostile to us all: Its conquest deserves the best of all mankind, and its opportunity for peaceful cooperation may never come again."

This speech seems to even present us in the contemporary era with ample suggestions for further peaceful cooperation in outer space activities including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Key words : Delimitation of Outer Space, Spatialist, Functionalist, COPUOS Legal Subcommittee, The Lowest Perigee